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구미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정에 근거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유사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 및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
- 나.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명칭을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 및 투자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자격 및 위원회의 기능에 “투자심사”에 관한 내용 추가(안 제2조)
- 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합 운영(안 제7조)
- 라.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제척 규정 위반 시 위원의 해촉 근거 마련(안 제5조, 안 제6조)

3. 조 례 안 : 붙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및 제6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 및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 및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 및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경제지원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경제지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도시건설국장

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미시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구미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 및 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 및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미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 및 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미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구미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 및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 등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7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 10의2.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 가. 교부현황
 - 나. 성과평가 결과
 -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 관 부 서		기획예산담당관
입 안 자	과 장	김 은 영
	담 당	정 윤 호
	담 당 자	석 병 훈 (480-6513)